

행정처분기준 (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그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조 문	행 정 처 분 기 준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장 폐쇄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2		사업정지 1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의 만료 및 「어 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 된 경우							
다. 유·도선사업자, 선 원(인명구조요원을 포 함한다), 그 밖의 중 사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나 주의의 무 태만 등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 1항제3호	사망사고 발생 시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2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 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보상 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 1항제4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마.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 원법」,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 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 1항제5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바. 법 제3조제1항에 따 른 신고(유·도선사업 을 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하는 신고에 한정한다)를 하지 않 거나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 1항제6호		사업장 폐쇄				

신고를 한 경우 사. 법 제3조제1항(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조의3제3항, 법 7 조제1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아. 법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차.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 제9조제1항제7호의2 법 제9조제1항제8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사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